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4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최민희 · 박지원
김 윤 · 이용선 · 서미화
박지혜 · 박균택 · 김 현
권칠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, 그중 하나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화장시설,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·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·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·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9호).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9호 중 “화장시설·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”를 “화장시설,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, 제13호에”로,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(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것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는 <u>제외한다</u>)</p> <p>10. ~ 32. (생략)</p>	<p>--<u>제외한다</u>) 및 제13조제1항 에 따른 <u>공설묘지(법률 제139 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에 합법적으 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것은 제외한 다)</u></p> <p>10. ~ 32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